

수 신 : 대전직할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

1994. 8.

제 목 :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서면동의서 제출

위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 
대전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첨 부 :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동의서 1부 끝.

동의자 : 오 석 중 의 원

외 / 인

( 찬성자 서명 별첨 )

## 贊成議員名單

## 動議書

### 1. 提案理由

- 이條例는 都市計劃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事業 受益者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하여 1977.2.14. 制定되었으나
-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制定(1989. 12. 30)과 동시에 이法 附則 第3條에 依據 都市計劃法 第65條가 削除되어 이條例를 廢止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子

- 大田直轄市 都市計劃事業 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의 廢止  
(施行日 : 公布한 날부터 施行)

### 3. 檢討事項

#### 가. 關聯 法規

- 都市計劃法 第65條 (受益者負擔金) 및 施行令 第56條
-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 附則 第3條 (다른法令의 改正) 및 施行令 第3條

#### 나. 檢討 内容

-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 (1989. 12. 30 制定) 및 施行令 (1990.3.2) 制定과 同時에 條例制定根據法 條項인 都市計劃法 第65條 (受益者 負擔金) 및 施行令 第56條가 改正 削除됨.
-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 및 施行令, 施行規則에 開發 負擔金의 賦課徵收 基準 및 方法을 詳細하게 規定하고 있으며, 이 法의 規定 以外의 開發利益은 土地超過 利得稅法에 의하여 徵收하도록 規定됨.
- 開發利益 負擔金은 開發利益의 50/100을 建設部長官이 賦課徵收도록 規定하고 있으며, 이 法律 第23條(權限의 委任) 第1項에 權限의 一部 (開發負擔金의 徵收 · 賦課 權限 除外)를 서울 特別市長,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, 委任된 内容이 空缺으로, 第2項에 市長 ·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開發 負擔金의 賦課 · 徵收 權限 대부분을 直接 委任함.
- 負擔金 徵收金의 配分은 50/100이 市 · 郡 및 自治區에 歸屬되고 나머지는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 特別會計에 歸屬되며 또한 委任手數料 7/100을 市長 · 郡守에게 支給도록 規定함.
- 上位法 關聯 條項이 削除되고 包括的으로 個別 法令이 制定되었으며, 廣域自治團體에 別途의 委任事項이 空缺으로 이 條例를 廢止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됨.

조례 제 호

## 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